

# 2025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

2025년 01월 01일 부터  
2025년 03월 31일 까지

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, 예천농업협동조합정관 제140조의2의  
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(게시)합니다.

2025년 4월

예천농업협동조합  
조합장 이달호

# 목 차

## I. 주요 현황

1. 주요기관 의결사항  
가. 총회(대의원회)  
나. 이사회
2. 사무소 및 인원 현황
3. 정관변경 사항

## II. 주요사업 추진 현황

1. 교육지원사업
2. 경제(유통)사업
3. 신용(금융)사업

## III. 주요사업 추진 실적

## IV. 재무 현황

1. 재무상태표
2. 손익계산서

## I. 주요 현황

### 1. 주요기관 의결사항

#### 가. 총회(대의원회)

| 개최일자        | 참석인원   | 주요 의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5.02.07. | 91/100 | 1. 정관 개정의 건<br>2. 2024년도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 |

#### 나. 이사회

| 개최일자        | 참석인원  | 주요 의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5.01.23. | 13/13 | 1. 차입금 최고한도 변경의 건<br>2. 출하선급금 차입의 건<br>3. 이용고배당 방법 기준 결정의 건<br>4. 출자법인에 대한 법인대출(차입) 연대보증한도 책정의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5.02.24. | 13/13 | 1. 조합원 가입 및 탈퇴조합원 지분 환급 승인의 건<br>2. 인사관련 제규정(모범안) 개정의 건<br>3.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조정의 건<br>4. 대리점별 무보증, 무담보 특례여신한도 책정의 건<br>5. 대리점별 여신거래 약정기간 연장의 건<br>6. 대의원 선거일 지정의 건 |
| 2025.03.11  | 13/13 | 1. 조합원 가입 승인의 건<br>2. 2025년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의 건<br>3. 인사관련 제규정(모범안) 개정의 건<br>4.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사무소 및 인원 현황

가. 사무소 현황

| 사무소명      | 주 소 (또는 위치)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본점(주사무소)  |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53    | 652-0970 |
| 수변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호명읍 수변로 77    | 655-5405 |
| 용문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시장길 9   | 655-9200 |
| 효자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75 | 652-1609 |
| 은풍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4-1  | 652-8184 |
| 감천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404  | 653-8511 |
| 보문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2   | 654-0033 |
| 호명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호명읍 호명로 545   | 652-5013 |
| 유천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77   | 653-9212 |
| 개포지점      | 경북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29  | 653-0221 |
| 농산물유통사업소  |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16    | 655-0975 |
| 농산물산지유통센터 |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26  | 654-0980 |
| 자재센터      |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68   | 652-0975 |
| 주 유 소     |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72   | 653-5432 |
| 하나로마트 본점  |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53    | 652-0977 |
| 하나로마트 수변점 | 경북 예천군 호명읍 수변로 77    | 652-1514 |

나. 인원 현황

| 구 분 |         | 2024년<br>(A) | 2025년 3월말<br>(B) | 증감(B-A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임 원 | 조합장(상임) | 1(0)         | 1(0)             | 0       |
|     | 이사(상임)  | 12(1)        | 12(1)            | 0       |
|     | 감사(상임)  | 2(0)         | 2(0)             | 0       |
| 직 원 | 지도·경제   | 125          | 119              | -6      |
|     | 신용      | 56           | 56               | 0       |
| 합 계 |         | 196          | 190              | -6      |

### 3. 정관변경 사항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관 제4조(구역)                    | 우리 조합의 구역은 예천군 예천읍, 용문면, 효자면, 은풍면, 감천면, 보문면, 호명면, 유천면, 개포면의 일원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리 조합의 구역은 예천군 예천읍, 용문면, 효자면, 은풍면, 감천면, 보문면, 호명읍, 유천면, 개포면의 일원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제10조(가입)제1항 제2호             | 2. 가구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16조(준 조합원의 가입·탈퇴) 제1항제2호  | 2. 가구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65조(선거일)제6항               |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(이하 “동시조합장선거”라 한다)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(이하 “동시조합장선거”라 한다)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2조(선거인명부 작성, 공고 및 열람)제1항 |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(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1통을,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·확정하여야 한다.   |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(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1통을,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·확정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2조(선거인명부 작성, 공고 및 열람)제2항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·확정하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·확정하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    |
| 정관 제72조(선거인명부 작성, 공고 및 열람)제4항 | ④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관 제72조(선거인명부 작성, 공고 및 열람)제6항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(재선거,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)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2조(선거인명부 작성, 공고 및 열람)제7항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4조(후보자등록신청)제2항          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(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(回報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5조(등록심사 및 접수)제4항~제6항     | <신 설><br><br>④ • ⑤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관할위원회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,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.<br>⑤ •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6조(등록무효 등)제1항            |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,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. |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<br>1.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<br>2. 후보자등록신청서,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<br>3.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<br>4.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|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관<br>제77조의2(<br>선거운동의<br>주체·기간<br>·방법)제1<br>항 | ①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<br>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<br>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<br>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<br>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<br>1명(이하 “후보자등”이라 한다)이<br>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, 제77조의11,<br>제77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<br>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<br>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2항                 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<br>제출하는 경우에는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br>선거공보에 범죄경력에 게재하여야 하고,<br>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<br>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<br>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<br>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3항                  |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<br>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<br>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<br>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<br>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<br>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<br>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<br>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4항                  | ③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<br>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<br>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<br>발송하지 아니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<br>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<br>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<br>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<br>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5항                  |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6항                  | 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<br>경력·학력·학위·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<br>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<br>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,<br>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<br>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<br>수 있으며,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<br>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<br>한다. | ⑥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<br>경력·학력·학위·상벌·범죄경력에 관하여<br>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<br>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<br>하고,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<br>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<br>수 있으며,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<br>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<br>한다. |     |
| 정관<br>제77조의3(<br>선거공보)<br>제7항                  |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<br>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<br>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⑦ 관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<br>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<br>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제77조<br>의3(선거공<br>보)제8항                      | ⑦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관 제77조의4(선거벽보) 제2항        |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소에 첨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7조의4(선거벽보) 제3항        | ③ 제77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선거공보”는 “선거벽보”로, “발송”은 “첨부”로, “규격을 넘는”은 “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”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제77조의3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선거공보”는 “선거벽보”로, “발송”은 “첨부”로, “규격을 넘는”은 “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”으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7조의5(어깨띠·윗옷·소품)       |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(上衣)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(上衣)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7조의6(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)    |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7조의7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) |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<br>1. 조합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<br>1.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정관 제77조의8(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)    |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    |

## Ⅱ. 주요사업 추진 현황

### 1. 교육지원사업

우리 농협은 조합원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화재 재해지원비 2건, 2백만원 지원
- 조합원 영농자재구입권 299백만원 지원
- 대학생자녀 장학금 74명, 74백만원 지원
- 초중고등학생자녀 장학금 50명, 14백만원 지원
- 조합원 경조비 8백만원 지원
- 원로조합원 건강증진 물품 169명, 16백만원 지원
- 항공방제료 지원사업 100백만원 지원

### 2. 경제(유통)사업

#### □ 구매사업

1/4분기 구매사업 실적은 6,273백만원으로 계획대비 17.79% 달성했으며, 전년동기 대비 127백만원 증가했습니다.

2/4분기에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재 및 비료·농약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면세유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, 농기계서비스센터에서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,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□ 판매사업

1/4분기 판매사업 실적은 9,72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21.63% 달성했으며, 전년동기 대비 188백만원 감소했습니다.

#### □ 마트사업

1/4분기 마트사업 실적은 6,204백만원으로 계획대비 24.55% 달성했으며, 전년동기 대비 10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.

조합원 여러분들의 예천농협 하나로마트 전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### 3. 신용(금융)사업

#### □ 수 신

1/4분기 상호금융예수금잔액은 788,455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,31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.

신용사업 손익 성장을 위하여 기관·단체예금 및 가맹점계좌유치 등 저원가성예금을 집중추진하고, 예수금 확대에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#### □ 여 신

1/4분기 상호금융대출금잔액은 379,647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,07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.

농업인구 감소 및 조합원 고령화, 정부 대출규제 증가로 인해 대출 수요가 급감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임직원은 대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#### □ 보 험

지역인구 감소 및 조합원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망 고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비대면 보험 판매의 증가 및 타 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으로 농협보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장기보험인 보장성 장기 손해보험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.

- 일할 때 더 내고, 은퇴 후 덜 내는 THE스마트한NH종신보험
- 가입은 간단하게 보장은 다양하게 (무)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
- 강화된 교통 법규에 대하여 안심하고 운전하는 (무)NH올바른지구굿데이운전자상해보험
- 소중한 재산은 물론 가족의 보금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(무)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
- 초고령시대 나와 우리가족을 위한 필수 상품 (무)NH365일간병인보험
-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, 농기계종합보험,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험료 9,235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.

### Ⅲ. 주요사업 추진 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구 분         |     | 연간계획<br>(A) | '25년 3월말<br>(B) | 달성률<br>(C=B/A) | 전년동기<br>(D) | 전년동기 대비 |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증 감     | 성장률    |
| 경제사업        |     | 109,332     | 23,326          | 21.34          | 23,294      | 32      | 0.14   |
|             | 판 매 | 44,958      | 9,722           | 21.63          | 9,910       | -188    | -1.90  |
|             | 구 매 | 35,263      | 6,273           | 17.79          | 6,146       | 127     | 2.07   |
|             | 마 트 | 25,275      | 6,204           | 24.55          | 6,307       | -103    | -1.63  |
|             | 가 공 | 65          | 159             | 244.84         | 23          | 137     | 603.06 |
|             | 기 타 | 3,770       | 967             | 25.65          | 908         | 60      | 6.56   |
| 상호금융<br>예수금 | 잔액  | 818,019     | 788,455         | 96.39          | 750,144     | 38,310  | 5.11   |
|             | 평잔  | 798,595     | 780,081         | 97.68          | 734,443     | 45,638  | 6.21   |
| 상호금융<br>대출금 | 잔액  | 403,007     | 379,647         | 94.20          | 383,718     | -4,072  | -1.06  |
|             | 평잔  | 407,688     | 384,926         | 94.42          | 395,577     | -10,651 | -2.69  |
| 보험료         |     | 27,195      | 9,235           | 33.96          | 8,794       | 442     | 5.02   |

※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, 창고, 이용,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

※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

## IV. 재무 현황

### 1. 재무상태표

(단위 : 백만원)

| 자 산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부채 및 자본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과 목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| 과 목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|
| I .유동자산               | 30,475  | I .유동부채               | 42,485  |
| 현금                    | 3,325   | 외상매입금                 | 1,979   |
| 외상매출금                 | 3,025   | 단기차입금                 | 20,511  |
| 재고,생물자산               | 12,492  | 기타유동부채                | 19,995  |
| 기타유동자산                | 11,633  | II .금융업예수금            | 788,455 |
| II .금융업예치금            | 369,257 | III.금융업차입금            | 34,074  |
| III.금융업대출채권*          | 393,271 | IV.보험(공제),<br>농작물보험부채 | 0       |
| IV.보험(공제),<br>농작물보험자산 | 0       | V.비유동부채               | -166    |
| V.비유동자산               | 130,567 | 장기차입금                 | 338     |
| 투자자산                  | 87,269  |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    | -504    |
| 유형자산                  | 43,298  | 부채 합계                 | 864,848 |
| 무형자산                  | 0       | I .출자금                | 28,963  |
|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   | 0       | II .자본잉여금             | 3,393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III.자본조정              | -60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IV.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| 213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V .이익잉여금              | 26,215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자본 합계                 | 58,723  |
| 자산 총계                 | 923,571 | 부채와 자본 총계             | 923,571 |

※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

※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

## 2. 손익계산서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| '24년 3월말<br>(A) | '25년 3월말<br>(B) | 증 감<br>(B-A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영업수익     | 27,519          | 27,778          | 259          |
| 영업비용     | 18,415          | 18,695          | 280          |
| 매출총이익    | 9,104           | 9,083           | -22          |
| 신용사업     | 5,489           | 5,161           | -328         |
| 경제사업     | 3,615           | 3,921           | 306          |
| 판매비와관리비  | 5,426           | 5,676           | 250          |
| 영업손익     | 3,678           | 3,407           | -272         |
| 교육지원사업준비 | 949             | 1,034           | 85           |
| 영업외손익    | 119             | 971             | 852          |
| 법인세차감전손익 | 2,848           | 3,343           | 495          |
| 법인세비용    | 0               | -26             | -26          |
| 당기순손익    | 2,848           | 3,369           | 521          |

※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